

##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1만분의 15”를 “1만분의15 또는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0항에 따른 “집합투자재산”을 말한다),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5조제5호에 따른 “투자일임재산” 및 “신탁재산”을 말한다)의 합계액의 1만분의3 중 큰 금액의”로, “총부채 및 영업수익(법 제38조제3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료 수입으로 한다) 등”을 “총부채 및 영업수익(법 제38조제3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료 수입으로 한다) 및 채무건전성 악화·금융사고 등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 유발의 정도 등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금융감독원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(이하 이 항에서 “감독분담금”이라 한다)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2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(이하 이 항에서 “발행분담금”이라 한다)의 합계액 중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한 부분(이하 이 항에서 “수지차익”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위원

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분담금을 납부한 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.

제12조제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46조 각 호에 따라 발생한 금융감독원의 당해연도 총수입에서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금융감독원의 당해연도 수입예산(제3항제1호에 따른 실제 소요경비가 수입예산을 초과한 경우에는 실제 소요경비)을 뺀 금액(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(零)으로 본다.) : 감독분담금 납부 기관에 기관별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반환
2. 수지차익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 : 다음 각 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관별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반환
  - 가. 감독분담금 납부 기관에 대한 반환액

수지차익에서	×	$\frac{\text{감독분담금} - \text{제1호의 금액}}{\text{감독분담금} + \text{발행분담금} - \text{제1호의 금액}}$
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		

나. 발행분담금 납부 기관에 대한 반환액

수지차익에서	×	$\frac{\text{발행분담금}}{\text{감독분담금} + \text{발행분담금} - \text{제1호의 금액}}$
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		

## 부 칙

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분담금)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은 법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금액의 <u>1만분의 15</u> 범위에서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, 검사대상기관별 <u>총부채 및 영업수익(법 제38조제3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료 수입으로 한다)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로 한다.</u> 이 경우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영역별로 법 제4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재원, 해당 금융영역의 감독·검사 등에 투입되는 금융감독원의 인력, 해당 금융영역의 영업수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 ②·③ (생략)</p>	<p>제12조(분담금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1만분의15 또는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0항에 따른 “집합투자재산”을 말한다),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5조제5호에 따른 “투자일임재산” 및 “신탁재산”을 말한다)의 합계액의 1만분의3 중 큰 금액의 --- 총부채 및 영업수익(법 제38조제3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료 수입으로 한다) 및 재무건전성 악화·금융사고 등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 유발의 정도 등---</u>.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④ 금융감독원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2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의 합계액이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한 기관에 납부금액 비율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. 다만, 법 제5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으며, 이월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분담금을 징수할 때 고려해야 한다. 다만, 법 제5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으며, 이월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분담금을 징수할 때 고려해야 한다.

<신 설>

④ 금융감독원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(이하 이 항에서 “감독분담금”이라 한다)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2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(이하 이 항에서 “발행분담금”이라 한다)의 합계액 중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한 부분(이하 이 항에서 “수지차익”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분담금을 납부한 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.

1. 법 제46조 각 호에 따라 발생한 금융감독원의 당해연도 총 수입에서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금

<신 설>

용감독원의 당해연도 수입예  
산(제3항제1호에 따른 실제  
소요경비가 수입예산을 초과  
한 경우에는 실제 소요경비)  
을 뺀 금액(음수인 경우에는  
이를 영(零)으로 본다.) : 감독  
분담금 납부 기관에 기관별  
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반환

2. 수지차익에서 제1호의 금액  
을 뺀 금액 : 다음 각 목의 산  
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  
관별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반  
환

가. 감독분담금 납부 기관에  
대한 반환액

수지차익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	×
감독분담금 - 제1호의 금액	
감독분담금+발행분담금-제1호의 금액	

나. 발행분담금 납부 기관에  
대한 반환액

수지차익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	×
발행분담금	
감독분담금+발행분담금-제1호의 금액	

⑤ (생 략)

⑤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	
연 락 처	(02) 2100 - 2782